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일자 : 2006. 8. 3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2006.3.24)과 관련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설치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준칙 변경 사항 중 협의체 위원명단 공개규정 마련

2. 주요골자

-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안 제2조)
- 나. 협의체위원 명단공개 : 협의체 위원 위촉 및 임명 시 위원명단 공개 (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6. 8. 8 ~ 8. 28(20일간) ▷ 제출된 의견없음
- 마. 기 타 : 조례표준안 시달(시 사회복지과-968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건의”를 “건의·의결”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결은 제4호에 한한다.

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3조제1항중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동조제2항중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중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동조제3항중 “1”을 “어느 하나”로 “위촉”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사하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중 “각 협의체” 를 “협의체” 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 협의체”를 “협의체”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 중 “심의” 를 각각 “심의·건의·자문·결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기능) 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단서신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p> <p>②(생략)</p>	<p>제2조 (기능) ①-----</p> <p>----- 건의·의결 -----</p> <p>----- 다만, 의결은 제4호에 한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p> <p>5. -----</p> <p>6. -----</p> <p>②(현행과 같음)</p>
<p>제3조 (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후단신설></p> <p>1. ~ 5. (생략)</p>	<p>제3조 (구성) ①-----</p> <p>----- 10인 이상 20인 이하 -----</p> <p>-----</p> <p>②-----</p> <p>어느 하나-----</p> <p>-----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4조 (실무협의체) ①(생략)</p> <p>②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p> <p>1. ~ 5. (생략)</p> <p>④~⑤(생략)</p>	<p>제4조 (실무협의체) ①(현행과 같음)</p> <p>②----- ----- 10인 이상 20인 이하 ----- -----</p> <p>③----- ----- 어느 하나 ----- ----- 임명 또는 위촉----- -----</p> <p>1. ~ 5. (생략)</p> <p>④~⑤(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4조의2 (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제7조 (위원의 해촉) ----- 협의체 ----- ----- ----- -----</p>

현행	개정안
<p>제9조 (회의록) ①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생략) <p>②(생략)</p>	<p>제9조 (회의록) ① 협의회-----</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심의·건의·자문·결정 사항 4. 심의·건의·자문·결정 결과 5. (현행과 같음) <p>②(현행과 같음)</p>